

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(의 회 사 무 처)



의회운영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I. 추가경정예산안 개요

1. 제출경위 및 편성요건

-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- 제출일 : 2022. 10. 28.
- 회부일 : 2022. 11. 01.
-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 여건과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

II. 추가경정예산안 현황

1. 세입예산안

- 해당사항 없음

2. 세출예산안

-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(이하추경안)은 기정예산 129억 7,994만 원 대비 0.03%, 391만 원이 증액된 129억 8,385만 원임

(단위 : 천 원)

구 분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12,983,846	12,979,936	3,910	0.03%
사 업 비	4,776,054	4,776,054	0	0%
행정운영경비	8,207,792	8,203,882	3,910	0.03%

III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광래)

1. 세입예산안 검토

- 해당사항 없음

2. 세출예산안 검토

가. 총괄

-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129억 7,994만 원 대비 391만원(0.03%)이 증액되어 129억 8,385만 원이 편성되었음
-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,
사업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47억 7,605만 원이고
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82억 388만 원 대비 391만 원(0.03%)
이 증액된 82억 779만 원임

나. 주요사업별 검토

- **공무직(무기계약) 근로자보수(391만원 증액)**
 - 2022년도 충북도청·공무직노동조합 간 임금 협약('22.9.30.)에 따라
공무직 근로자의 기본급, 명절휴가비, 연장수당 등 인상분과 신설된
대민활동비가 소급 반영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됨

다. 명시이월사업조서 검토

-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,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
-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, 예산액 3억 1,475만 원 중 1억 7,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, 사업별 이월 사유로는 차량 부품(반도체) 납품 지연에 따른 연내 의회 업무용 차량 납품 불가, 학술연구용역 사업 기간 부족 등임
- 입법활동지원의 의정 및 도정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현안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연구용역 사업은 12代 의회가 7월에 출범함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학술용역사업 발굴 및 시행시기가 촉박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짐

□ 명시이월사업 조서

(단위 : 천 원)

부서명	세부사업	이월내용	예산액	이월액	사유
합계	2개 사업		314,750	172,000	
의회사무처	의정활동업무추진	의회 업무용차량 대체 구입	202,750	96,000	차량 납품지연
의회사무처	입법활동지원	학술연구용역	112,000	76,000	사업기간 부족